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3나84332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경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강금실

소송수행자 이○○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1. 11. 선고 2002가단203453 판결

변 론 종 결 2004. 5. 12.

판 결 선 고 2004. 6. 16.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장○○에게 4,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을 제2호증의 1 내지 46, 을 제4호증의 1, 2, 3, 원심증인 김현주, 당심증인 정화영의 각 증언 및 원심의 테이프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녹색연합은 1991. 6.경 설립된 환경단체로서, 원고들 중 권○○, 김○○, 남○○, 박○○, 박○○, 이○○은 녹색연합의 자원활동가들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녹색연합의 상근활동가들이다.

나. 녹색연합은 ‘2002년 녹색순례’라는 이름으로 2002. 5. 7.부터 2002. 5. 14.까지 7박 8일간 군산시, 화성시 우정면 매항리, 평택시 등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을 도보 또는 차량으로 순례하면서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오염 실태를 점검한다는 행사를 계획하고, 마지막날인 2002. 5. 14. 11:00부터 1시간동안 용산 미군기지 1번 게이트에서 위 행사를 정리하는 ‘2002년 녹색순례 보고대회’를 갖기로 하여 2002. 5. 5. 종로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였는데, 옥외집회 외에 시위(행진)방법이나 진로에 관한 신고는 없었다.

다. 위 보고대회는 2002. 5. 14. 11:00경 개최되어 원고 서○○의 사회로 11:45경까지 진행되었으며, 원고 서○○은 폐회를 선언하면서 나머지 원고들에게 소지한 피켓을 모으고 깃발을 접은 다음 타고 갈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녹사평역 방향으로 집단을 이루지 말고 한 사람씩 10보의 간격을 유지하며 출발하라고 지시하였다.

라. 원고들 중 선두 일부가 녹사평역을 향하여 출발하려 하자, 당시 현장책임자였던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원고들이 신고하지 않은 행진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소속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원고들을 둘러싸서 제지하고, 불법적인 시위 행진에 해당되니 즉각 해산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원고들은 경찰의 포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통행권을 보장하라’, ‘정보과장 해명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였고, 그러는 가운데 일부 원고들이 차례로 나서서 경찰을 성토했다는 연설을 하였으며, 취재하던 일부 방송기자 등도 경찰의 제지에 대한 항의에 따라 나서기도 하였다.

바. 경찰이 원고들의 해산을 위하여 녹색연합에서 마련한 버스를 집회장소로부터 5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대기시키고 탑승하여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3:00경 귀가차량을 지나쳐 남영역 방향으로 50 내지 60m 정도 진행하였고,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발생하였다.

사. 원고들은 항의를 계속하다 같은 날 14:10경 위 버스를 타고 귀가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원고들은 적법한 집회인 위 보고대회를 마치고 해산하여 귀가하기 위하여 귀가차량이 있던 곳까지 이동하려 했음에도, 경찰은 근거도 없이 원고들이 미신고 불법행진을 한다는 이유로 귀가를 방해하면서 노상에서 2시간 여 동안 감금하고 폭행까지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소속 경찰관들의 불법적인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와 증인 정화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집회장소인 1번 게이트에서 녹사평역까지 약 1.5km 구간에 용산 미군기지의 주요 출입구인 5번, 7번 게이트가 있고, 특히 5번 게이트는 ‘SOFA개정 국민 행동’ 등의 단체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불법시위가 발생하는 곳이었으며, 녹색연합도 2000. 7. 24. 인접한 국방부 정문 앞에서 미군의 사과를 요구하는 미신고 기습집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와 같이 원고들이 진행하려던 장소가 불법시위의 발생이 잦고 외국군 주둔시설의 주변으로서 경찰에 의한 경비의 필요가 큰 곳이며, 원고들은 미군의 정책 등을 비판하는 집회를 마친 후 피켓 등 시위용품을 소지한 채 약 1.5km나 되는 거리를 미군기지의 주요 출입구가 있는 곳으로 지나 수십명이 함께 이동하려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경찰로서는 원고들이 신고하지 아니한 불법 행진시위를 한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다 할 것이고, 경찰은 원고들의 진행을 제지하는 한편 원고들의 귀가차량을 이동시켜 그 자리에서 해산할 방도를 마련해 주었으며, 원고들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소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지만, 경찰의 행진 저지의 방법이나 수단이 시위 진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현장에서 허용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하는 시위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에게 시위행진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미신고 불법시위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제지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에 피고의 책임을 물을 만한 과실은 없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중

판사 김명한

판사 조규현

원고목록

1. 고○○
2. 구○○
3. 권○○
4. 김○○
5. 김○○
6. 김○○
7. 김○○
8. 김○○
9. 남○○
10. 남○○
11. 박○○
12. 박○○
13. 박○○
14. 서○○
15. 서○○
16. 송○○
17. 엄○○
18. 윤○○
19. 이○○
20. 이○○
21. 이○○
22. 이○○
23. 이○○
24. 장○○
25. 정○○

26. 정○○

27. 정○○

28. 정○○

29. 정○○

30. 조○○

31. 지○○

32. 최○○

33. 한○○

34. 홍○○